

학교법인 삼육학원

2020년도 8월 정기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0년 8월 27일 오 전 09:00 ~ 오 전 10:00(회의소집통보일 : 2020년 8월 19일)

2. 장 소 : 한국연합회 회의실

3. 출결사항

구 분	정 수	재 적	참 석	참 석 임 원	결석임원	비 고
이 사	15명	15명	14명	황춘광 강석우 강순기 김은자 김일목 김원상 박두한 박명석 박정택 신양희 신원식 오세원 이신연 허창수	박신국	
감 사	2명	2명	2명	은기호 최호성		

4. 안 건 :

- | | |
|--|---|
| (1) 교직원 인사
(3) 임원 사임 및 선임
(5) 법인정관개정
(7) 왕숙지구 토지 보상 협상 관련 변호사 선임
(9) 법인보조금 지급
(11) 징계위원회 구성 | (2) 임원 중임
(4)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
(6)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
(8) 적립금 운영 기간 및 금액변경
(10) 삼육대학교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불용처리
(12) 간서명 임원 선임 |
|--|---|

5. 회의내용 : 이사장 황춘광 목사님 의장석에 등단하고 성원보고에 이어 인사 말씀이 있었고 (인사말씀 생략) 부의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다.(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1) 교직원 인사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다음은 법인산하 각급학교의 2020학년도를 위한 교직원 인사안으로 별지 1과 같습니다. 간사의 설명과 같이 해당학교의 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의 제청으로 제안된 별지 1의 교직원 인사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이사 : 동의합니다.

김일목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교직원 인사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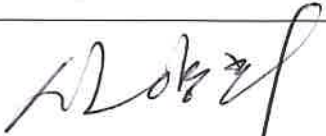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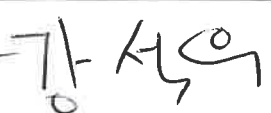
(2) 임원 중임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다음은 박두한 이사의 이사 임기가 2020년 9월 16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이사 선임을 하여야합니다.(박두한 이사 퇴장)

강순기이사 : 박두한 현임 이사 중임을 제안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오세원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의견

간서명			
-----	---	--	---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 (찬성:13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박두한 이사의 중임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두한 이사 입장)

(3) 임원 사임 및 선임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간사의 설명에 부언하면 개인사로 인하여 법인의 교육경험이사 이신 박명석 이사께서 2020년 8월 31일부로 사임 의사를 표하셨습니다.(박명석 이사 퇴장) 학교법인 이사 재임기간 동안 법인의 학교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일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박명석 이사의 2020년 8월 31일부 사임안 의결을 제안합니다.

신양희이사 : 동의합니다.

김원상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시기 바랍니다.(기타의견 없음) 그럼 찬성하시면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찬성:13명, 반대:0명)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박명석 이사의 사임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의 사임 결의에 따라 후임이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사회에서 임명되는 이사들의 임기는 교육부의 승인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후임 이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수이사 : 서울삼육고등학교 최승호 교장선생님을 교육경험이사로 추천하며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석우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시기 바랍니다.(기타의견 없음) 그럼 찬성하시면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찬성:13명, 반대:0명)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최승호 이사 임명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명석 이사 입장)

(4)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다음은 법인산하 각급학교의 2020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학부모부담수입증가 및 교육비특별회계 증가의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별지 2의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박두한이사 : 동의합니다.

김은자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별지 2의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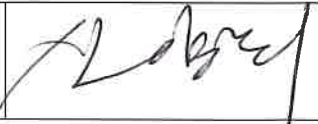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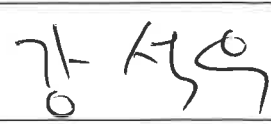
(5) 법인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간사의 설명과 같이 법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별지 3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신원식이사 : 동의합니다.

신양희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 (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별지 3의 법인정관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서명			
-----	---	--	---

(6)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다음은 동해삼육고등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처분하는 결의 안입니다. 이는 법인 산하 동해삼육고등학교 주변 유휴토지를 매각하는 안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169번지(182㎡)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172-3(79㎡)

면 적 : 261㎡(79평)

처분금액 : 45,000,000원이상

처분금용도 :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이에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 합니다.

박정택이사 : 동의합니다.

강순기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동해삼육고등학교 교육용기본재산의 수익용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 결의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왕숙지구 토지 보상 협상 관련 변호사 선임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간사의 설명과 같이 왕숙지구 토지 보상 협상 관련 변호사 선임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530-12번외 28필지

면 적 : 70,092㎡(21,240평)

대 상 : 법무법인 리츠

비 용 : 10,000,000원(부가세별도)

자 원 : 학교법인 일반회계

박두한이사 : 동의합니다.

김일목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 (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왕숙지구 토지 보상 협상 관련 변호사 선임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적립금 운영 기간 및 금액변경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서울삼육중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적립금 운영 기간 및 금액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아래와 같이 적립금 운영 기간 및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적립기간 변경 : 5년(2016학년도~2020학년도) → 4년(2016학년도~2019학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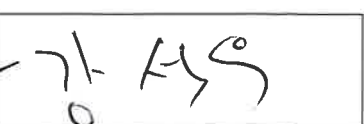
적립금액 변경 : 97,500,000원 → 78,000,000원

변경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매점 등의 임대수입 재원의 감소

김은자이사 : 동의합니다.

이신연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서울

간서명			
-----	---	--	---

삼육중학교 적립금 운영 기간 및 금액 변경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법인보조금 지급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 설명 생략) 다음은 호남삼육중학교의 요청으로 법인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가. 호남삼육중학교

보조목적 : 2020학년도 장학금

보조금액 : ₩100,000,000

자 원 : 법인운영비

이에 학교 발전을 위해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박정택이사 : 동의합니다.

오세원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법인보조금 지급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육대학교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불용처리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 설명 생략) 다음은 삼육대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을 아래와 같이 불용처리하는 안입니다.

구 분	세부내역			
사 업 명	· 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사업내용	· 1차 사업대상: 테이블, 하이팩의자, 컴퓨터본체, PC모니터, 복합기, 프린터, 기타			
	구 분	품목수량	금액(원)	잔존가액(원)
	집기비품	283	171,694,358	0
	기계기구	286	752,671,528	0
	차량운반구	1	75,000,000	0
	합 계	570	999,365,886	0
	· 2차 사업대상: 1실습106메카트로닉스실험실-실습장치, 기타			
	구 분	품목수량	금액(원)	잔존가액(원)
	기계기구	24	140,924,000	0

이에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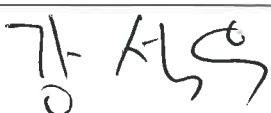
김일목이사 : 동의합니다.

박두한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삼육대학교의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불용처리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징계위원회 구성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 설명 생략) 간사의 설명과 같이 동해삼육고등학교로부터 징계위원회 구성

간서명			
-----	---	--	---

요청을 받은 바 별지 4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강석우이사 : 동의합니다.

신양희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동해 삼육고등학교 징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간서명 임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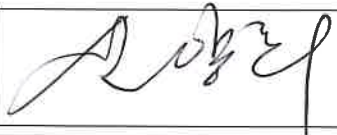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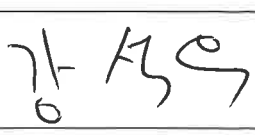
이 사 장 : 이제 간서명 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수이사 : 강석우, 이신연, 신양희이사를 추천하며 동의합니다.

김원상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간서명 임원으로 강석우, 이신연, 신양희이사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08월 27일

간서명			
-----	---	--	---

◆참석이사:

이사장 황충광

이사 오세원

이사 허창숙

이사 백재택

이사 김원상

이사 김일복

이사 강순기

이사 신원석

감사 은기호

이사 박두환

이사 박명석

이사 김은

이사 신영희

이사 강석영

이사 이신민

이사

감사 최호성

간서명

신영희

이신민

강석영

별지1. 교직원 인사안

1. 삼육대학교 인사

가. 신규채용

황효정	식품영양학과 조교수-정년트랙 전임교원 (담당수업:조리원리, 단체급식및실습, 통계조사분석과SPSS, 식생활과문화)	2020.09.01.~2022.08.31.
한금윤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정년트랙전임교원 (담당수업:글로벌사고와표현, 영화읽기와감정수업)	2020.09.01.~2022.08.31.
신남주	유아교육과 조교수-특성화트랙 전임교원 강의중심교수 (담당수업:부모교육, 아동권리와복지, 유아사회교육)	2020.09.01.~2022.08.31.
홍승아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심교수 (담당수업:한국어문법론, 글로벌사고와 표현)	2020.09.01.~2022.08.31.
조용범	동물생명자원학과 조교수-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심교수 (담당수업:동물영양학, 사료영양분석실험)	2020.09.01.~2022.08.31.
정성은	컴퓨터공학부 조교수-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심교수 (담당수업:IOT프로그래밍,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2020.09.01.~2022.08.31.
Yoon Surina Rin	영어영문학부 조교수-외국인 전임교원 전공강의교수 (담당수업:영어번역 I, 토플II, 영어청취특강)	2020.09.01.~2022.08.31.

나. 승진임용

유예진	일본어학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2020.09.01.~2024.08.31.
-----	------------------	-------------------------

다. 면직

김현민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의원면직)	2020.09.01.
박정규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의원면직)	2020.0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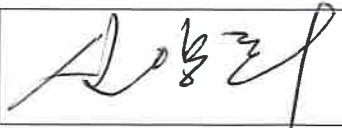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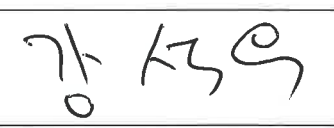
2. 중등교원 인사

가. 퇴직

박명석	한국삼육고등학교 교장 명예퇴직	2020.08.31.
박영자	원주삼육중학교 교사 의원면직	2020.08.31.

나. 휴직

박지원	서울삼육중학교 교사 질병휴직연장	2020.09.01.~2021.02.28.
박현석	서울삼육중학교 교사 질병휴직연장	2020.09.01.~2021.02.28.
곽의신	영남삼육중학교 교사 육아휴직연장	2020.09.01.~2021.02.28.
강은구	호남삼육고등학교 교사 육아휴직	2020.09.01.~2021.02.28.
장수진	호남삼육고등학교 교사 육아휴직	2020.08.30.~2021.07.31.

간서명			
-----	---	--	---

3. 초등교원 인사

가. 복직

안효선 태강삼육초등학교 교사 2020.09.01.

나. 휴직

강지숙 서울삼육초등학교 교사 육아휴직연장 2020.08.26.~2021.08.25.

4. 직원 인사

가. 퇴직

김선홍(일반직9급) 서해삼육고등학교 시설관리직(의원면직) 2020.06.30.

홍종일(기능직7급) 삼육대학교 사무처 시설관리팀(의원면직) 2020.10.09.

나. 복직

권인율(일반직7급) 삼육보건대학교 혁신기획처 2020.09.30.

간서명		이 신 연	강 지 숙
-----	---	-------	-------

별지2.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초1. 동해삼육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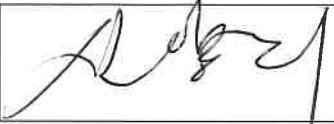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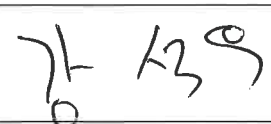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1,873,250		1,686,910		186,340		11.2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3,000	0.2	교육활동 지원	26,654	96,054	5.1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5,000	84,000	4.5	기본적 교육활동	16,942	459,105	24.5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209,608	209,608	11.2	선택적 교육활동	22,518	148,668	7.9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10,900	52,476	2.8	인적자원 운용	22,692	875,683	46.8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8,868	1,509,988	80.6	학교 일반운영	-5,053	64,558	3.5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500	14,178	0.8	학교 재무활동	1,153	1,153	0.1
					학교시설 확충	-10,060	5,940	0.3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11,494	222,089	11.9

초2. 서울삼육초등학교

[단위 : 천 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6,360,824		6,030,461		330,363		5.5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73,450	73,450	1.1	인적자원 운용	-47,353	2,161,211	33.9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245,155	245,155	3.8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58,917	898,215	14.1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0	12,624	0.1	기본적 교육활동	220,340	1,434,988	22.5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413,795	5,552,542	87.2	선택적 교육활동	-75,155	1,203,152	18.9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2,000	63,500	0.9	교육활동 지원	39,720	220,830	3.4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413,553	413,553	6.5	학교 일반운영	33,894	382,428	6
					학교시설 확충	0	40,000	0.6
					학교 재무활동	0	20,000	0.3

간서명			
-----	---	--	---

중1. 원주삼육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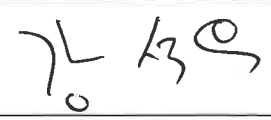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2회	3,598,432		3,542,546		55,886		1.6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43,794	3,179,312	88.3	인적자원 운용	-9,459	2,142,502	59.5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0	12,696	0.3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2,389	280,291	7.7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2,092	394,337	10.9	기본적 교육활동	372	603,399	16.7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0	2,360	0	선택적 교육활동	9,606	52,541	1.4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9,727	0.2	교육활동 지원	13,119	135,110	3.7
					학교 일반운영	859	141,222	3.9
					학교시설 확충	9,000	232,165	6.4
					학교 재무활동	0	11,202	0.3

중2. 호남삼육중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2회	3,728,860		3,857,695		-128,835		-3.3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1,000	1,000	0	인적자원 운용	-182,621	1,842,379	49.4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133,025	417,697	11.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22,857	629,504	16.8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60	20,060	0.5	기본적 교육활동	-296,915	483,732	12.9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261,920	3,205,082	85.9	선택적 교육활동	1,000	104,868	2.8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000	10,200	0.2	교육활동 지원	26,495	165,505	4.4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74,821	0	학교 일반운영	40,349	300,872	8
					학교시설 확충	160,000	200,000	5.3
					학교 재무활동	0	2,000	0

간서명			
-----	---	--	---

고1. 원주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2회	4,347,944		4,229,837		118,107		2.8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953	25,346	0.5	인적자원 운용	-15,391	2,417,008	55.5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191,191	3,464,011	79.6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46,019	853,361	19.6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35,860	220,012	5	기본적 교육활동	32,304	321,530	7.3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99,364	580,834	13.3	선택적 교육활동	-67,577	40,956	0.9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0,533	12,970	0.2	교육활동 지원	162,122	281,376	6.4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44,771	1	학교 일반운영	12,668	270,049	6.2
					학교시설 확충	40,000	157,840	3.6
					학교 재무활동	0	5,824	0.1

고2. 호남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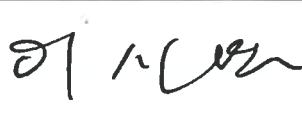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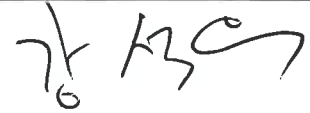
예산구분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2회	3,824,619		3,715,924		108,695		2.9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3,310	3,310	0	인적자원 운용	-12,950	2,214,032	57.8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347,891	3,047,021	79.6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5,835	1,063,804	27.8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108,432	391,766	10.2	기본적 교육활동	-2,461	79,147	2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34,774	358,417	9.3	선택적 교육활동	3,106	39,606	1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700	7,705	0.2	교육활동 지원	-61	91,398	2.3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16,400	0.4	학교 일반운영	5,426	235,332	6.1
					학교시설 확충	100,300	100,300	2.6
					학교 재무활동	-500	1,000	0

간서명	이승원	강서영
-----	-----	-----

삼육보건대학교

[단위 : 천원]

수 입 의 부				지 출 의 부			
관 별	2020추경예산	2020 본예산	증 감	관 별	2020추경예산	2020 본예산	증 감
등록금수입	10,621,799	10,546,107	75,692	인 건 비	7,827,942	7,483,596	344,346
전입및기부수입	3,887,757	3,800,680	87,077	관리운영비	1,909,665	1,967,024	-57,359
교육부대수입	344,390	344,390	0	연구학생경비	5,273,798	5,275,731	-1,933
교육외수입	80,250	92,250	-12,000	교육외비용	4,180	2,000	2,180
투자및기타자산수입	78,701	100,301	-21,600	전 출 금	0	0	0
고정자산매각수입	8	8	0	예 비 비	137,089	140,000	-2,911
유동부채입금	1	1	0	투자및기타자산지출	63,009	63,009	0
고정부채입금	2	2	0	고정자산매입지출	288,026	192,375	95,651
미사용전기이월	502,805	250,000	252,805	유동부채상환	1	1	0
				고정부채상환	12,001	10,001	2,000
				미사용차기이월	2	2	0
합 계	15,515,713	15,133,739	381,974	합 계	15,515,713	15,133,739	38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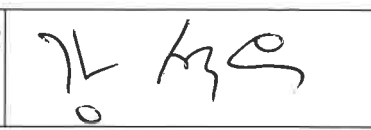
간서명			
-----	---	--	---

별지3. 법인정관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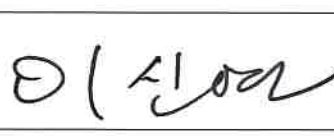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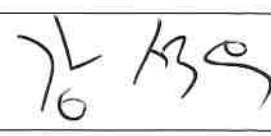
정관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제 43조 (임용)	①생략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⑧생략 ⑨신설	①~⑧동일 <u>⑨교원 임용 중 제48조②항2호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본조②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다.</u>	
제 84조 (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 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⑦생략 ⑧신설	①~⑦동일 <u>⑧직원 임용 중 제48조②항2호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본조①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다.</u>	
제 44조 (휴 직 및 휴 직 의 사유)	7의2.신설 <u>12.교원으로서 10년이상 근무한 경우</u>	<u>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u> <u>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제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u>	

간서명	최재희	이성민	강석우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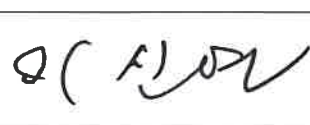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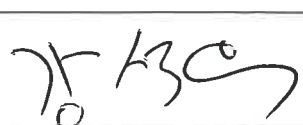
정관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제 45 조 (휴직의 기간)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생략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u>3월로</u>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생략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u>1년(여성은 3년)</u>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 2. 신 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u>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u> 2. 동일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u>3개월 이내로</u>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u>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u> 5. 동일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u>3년</u> 이내로 하되 분할 하여 휴직할 수 있다. <u>6의 2. 제44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u>	
제 45 조 의 2 (겸 직 의 기간)	제44조의 2의 사유로 겸직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u>삭제</u> - 정관 제44조의 2 규정 삭제됨	
제 47 조 (휴직교 원 의 처우)	①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u>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u>,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u>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이후 신설></u>	①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u>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u>,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u>이 경우 교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u>	

간서명			
-----	---	--	---

정관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제48조 (직 위 해 제 및 해 임)	①~③생략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⑥생략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③동일 ④제2항의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제1항,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⑤~⑥동일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과 제2항의 제4호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과 제2항의 제4호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의2(면 직 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4. 생략 5.신설 6.신설	①동일 1~4.동일 5.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제50조 (의 사 에 반 한 휴 직, 면 직 등 의 금 지)	③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회 의 록 작 성)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간서명			
-----	---	--	---

정관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제 59 조 (교원 징 계 위 원 회 조직)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 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 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제 62 조 (징 계 위 원의 기 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 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신설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 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 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 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6 조 의2(징 계 사 유 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 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0 조 (교장등)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교 카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④신설 ⑤신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u>교무를 관리 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u> ④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⑤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고 등 학 교

간서명			
-----	---	--	---

정관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제102조 (교장등)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④신설 ⑤신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 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④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⑤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중 학 교
제104조 (교장등)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④신설 ⑤신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 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④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⑤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 등 학 교

간서명		이신민	김성우
-----	---	-----	-----

별지4. 징계위원회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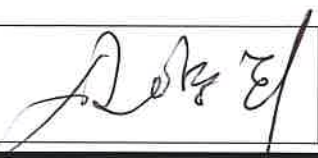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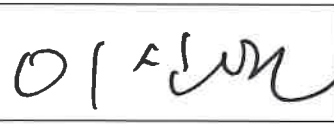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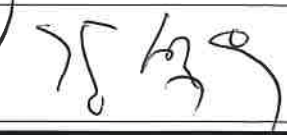
학교법인 삼육학원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1. 교원 징계위원회

소속학교명	징계위원회 명칭	징계위원 구성 현황				교원 위원 구분			외부위원 자격 (사립학교법 제62조제3항 각목)			위원임기		
		법인이사위원 (수)	교원위원 (수)	외부위원	총인원수	교감	교무부장	교원	법조인(가목)	조교수이상 (나목)	기타(라목)	교원위원	법인이사위원	외부위원
동해삼육초등학교	동해삼육초등학교징계위원회	강석우, 강순기, 신양희 (3명)	박경연, 윤정순, 최은하 (3명)	박재영 (1명)	7명	1	1	1	1			2년	3년	3년
동해삼육중·고등학교	동해삼육중·고등학교징계위원회	강석우, 강순기, 신양희 (3명)	김종섭, 장경숙, 정진웅 (3명)	박재영 (1명)	7명	1	1	1	1			2년	3년	3년

2. 교직원 징계위원회

소속학교명	징계위원회 명칭	징계위원 구성 현황				교직원 위원 구분			외부위원 자격 (사립학교법 제62조제3항 각목)			위원임기		
		법인이사위원 (수)	교직원위원 (수)	외부위원	총인원수	교감	행정실장	직원	법조인(가목)	조교수이상 (나목)	기타(라목)	교원위원	법인이사위원	외부위원
동해삼육초등학교	동해삼육초등학교징계위원회	강석우, 강순기, 신양희 (3명)	김영호, 윤정순, 조상연 (3명)	박재영 (1명)	7명	1	1	1	1			2년	3년	3년
동해삼육중·고등학교	동해삼육중·고등학교징계위원회	강석우, 강순기, 신양희 (3명)	김종섭, 김해식, 조성기 (3명)	박재영 (1명)	7명	1	1	1	1			2년	3년	3년

간서명			
-----	---	--	---